



내부통제 관련 해외당국 운영사례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효섭

(hslee@kcmi.re.kr)

목차

1. 미국 내부통제 운영 사례
2. 영국 내부통제 운영 사례
3. 일본 내부통제 운영 사례
4. 국내 시사점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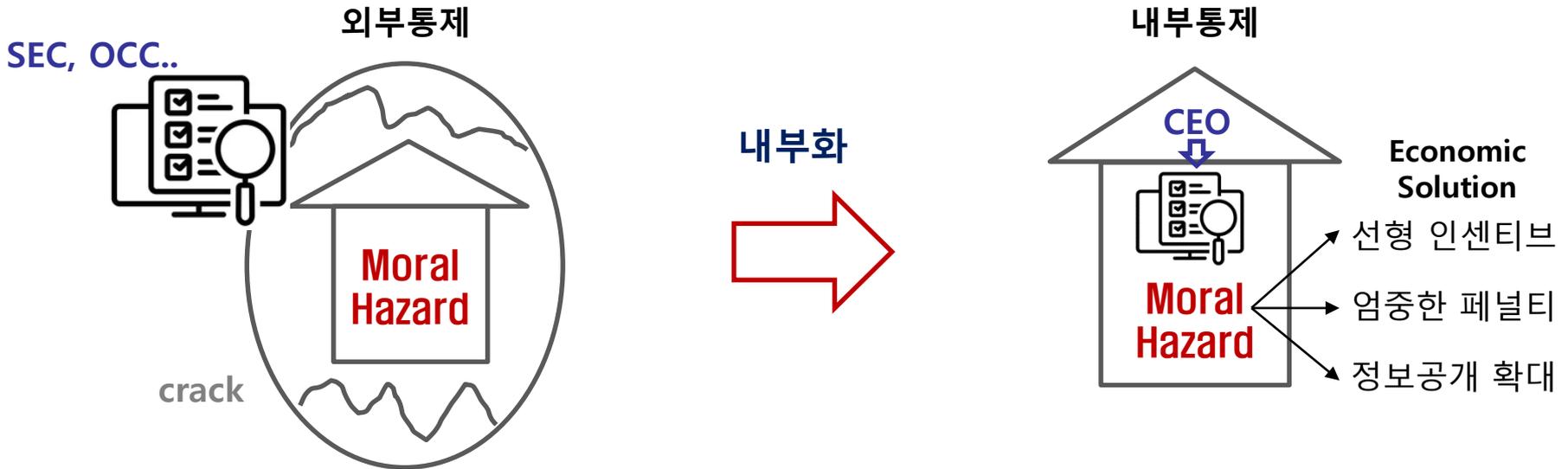
1. 이효섭, 이석훈, 안수현(2022), "주요국 내부통제 제도 현황 및 한국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향", 자본시장연구원 연구보고서 2022-01.
2. 김유니스(2014), "금융회사 임직원의 감독책임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 미국법 사례를 참고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18(3) 197-237.
3. 송옥렬(2022),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의무", 기업법연구, 36(1), 9-43.
4. 안수현(2021),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향: 법적 제언", 자본시장연구원 정책세미나
5. 안수현(2002), "미국 증권법상의 감독자책임", 서울대학교 법학, 43(1), 436-464.
6. 황현영(2021),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연구", 법조 70(6)
7. COSO(1992), Internal Control-Integrated Framework
8. 기타 다수 학술문헌 참조

미국 내부통제 제도 및 운영 사례

미국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 배경

❖ 외부통제의 한계 증가

- 금융회사 및 기업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등 화이트컬러 범죄 증가
 - 1950~60년대 브로커딜러의 위법 행위가 다수 발생 → '64년 SEC는 감독자책임 법제화
 - 1970년대 전후, 90년대말 회계분식 범죄 증가 → '92년 COSO 프레임워크, '02년 SOX법 제정
- 금융회사 업무가 확대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지능화된 범죄 증가
 - 1980~90년대 지능화된 금융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 → '91년 양형기준 강화
-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범죄로 인한 소비자피해 규모 증가
 - 대형IB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로 대규모 소비자피해 발생 → OCC, FINRA 규정 강화



- ✓ 화이트컬러 범죄 증가
- ✓ 업무범위 확대

- ✓ 감독자책임 강화
- ✓ 유인부합적 인센티브

미국 내부통제 제도의 법경제적 함의

외부통제의
내부화

..... ✓ 금융감독기관이 수행한 감독, 검사 업무의 내부화 유도

규제방식
전환

..... ✓ 업무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로 하여금 자율규범 준수 부여

외부규제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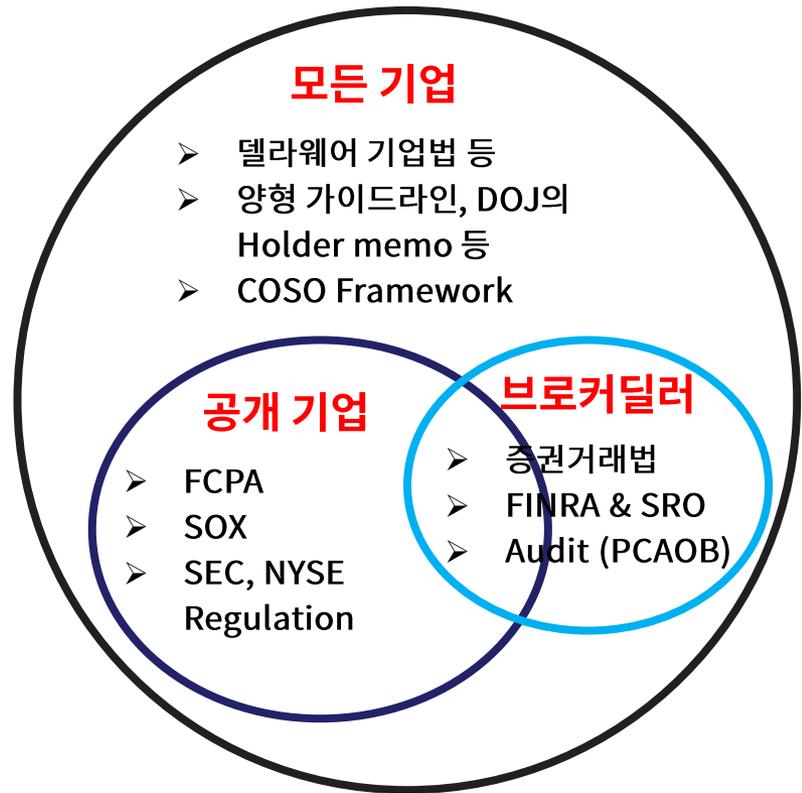
..... ✓ 내부통제가 강화될수록 외부규제는 완화되는 효과

미국 내부통제 제도 발전과정: 개관

- ❖ 행정규제 한계 극복을 위해 외부통제의 내부화 방안으로 내부통제를 강화
 - ①엄격한 제재 ②인센티브 제시를 위해 내부통제 활용 ③감독자 책임 강화를 추구



미국의 내부통제 제도 발전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와 감독책임과 의무 (Board's responsi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델라웨어법: Caremark(1996), Stone(2006) 판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법적 책임 (Corporate Liability)과 양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 가이드라인 (USSG: 1991, 2005) - Holder & Thompson memo : 1999~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권고 및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SO I, II(1992, 2004) - 증권거래법(1964), SEC, FINRA, PCAO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CPA(1977), SOX(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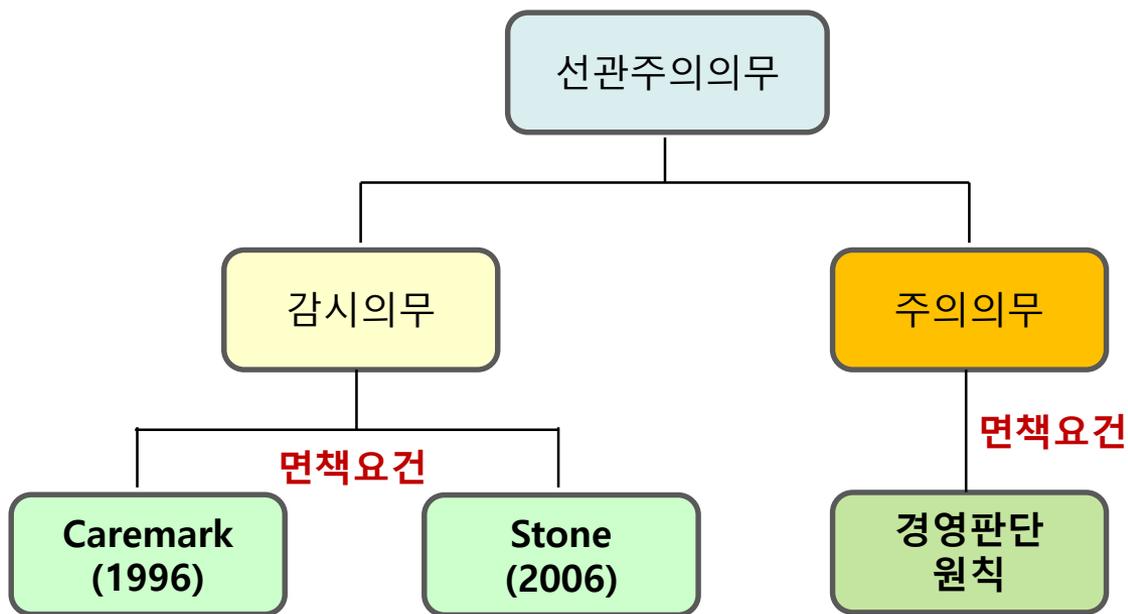


이사의 감시의무 및 면책 사유로서 내부통제 제도

❖ 이사의 감시의무

- 이사는 선관주의 의무 중 하나로 감시의무(감독자 책임)을 가짐
- 판례에서 이사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감시의무 면책 사유로 인정

미국 회사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면책



브로커딜러의 감독자 책임 및 내부통제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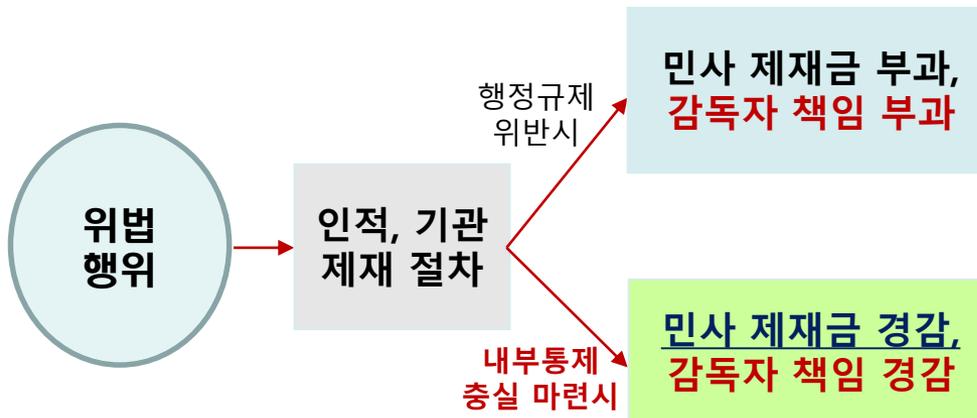
❖ 브로커-딜러 CEO 및 임원에게 감독자 책임을 명문화

- 위법행위자 뿐 아니라 위법행위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중간)감독자 및 최고상급감독자 또는 회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부여(1934년 증권거래법 15(b)(4)(E))
 - 감독소홀 범위: 감독 소홀, 지배자(Controlling person) 책임, 공모 등
 - 지배자 범위: 대주주, 이사회 멤버 등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자(1933년 증권법 15조)
- 이때, 감독소홀 범위 등에 따라 CEO가 아닌 중간감독자까지만 최종 책임 부과가 가능

❖ 합리적으로 내부통제 절차 및 시스템을 갖춘 경우 감독자 책임에 대해 면책 가능

- 면책 요건을 법령에서 명시(1934년 증권거래법 15(b)(4)(E))
 - ① 직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거나 실무적으로 이를 적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나 시스템을 마련하고 ② 그러한 절차와 시스템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없는 상황에서 감독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절차와 시스템을 적절히 이행할 것
- 금융사고 이후라도 내부통제 충실 마련시 민사 제재금 감면이 가능

미국 내부통제 활용 및 감독자 책임(1934년 증권거래법)



FINRA의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 감독시스템에 관한 세부 규정(Rule 3110) 예시

- 증권회사는 서면화된 감독절차의 수립과 유지보수, 감독 임무를 수행할 감독자를 지정해야 함
- 증권회사는 업무 관련한 모든 거래와 통신을 점검할 수 있는 서면화된 감독 절차를 갖춰야 함
- 증권회사는 합리적으로 설계된 위험 기반의 점검시스템을 갖춰야 함
- 증권회사는 이해상충 가능성으로 인해 감독 표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 감독 통제 시스템에 관한 세부 규정(Rule 3120) 예시

- 증권회사는 감독 통제정책과 절차에 관한 시스템의 수립과 이를 완수할 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 책임자는 필요시 감독 절차를 추가로 수립해야 하며 결과에 기초하여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변경해야 하는 책임을 지며, 위험기반 방법론과 표본 추출을 통해 시험범위를 결정할 수 있음
- 책임자는 감독 통제와 시험 결과를 상세히 기술한 보고서를 연간으로 고위 경영진에 제출해야 함

❖ 컴플라이언스와 감독 프로세스에 관한 연간 인증 규정(Rule 3130) 예시

- 증권회사는 컴플라이언스 책임자(CCO)로 근무할 한 명 이상의 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 증권회사 CEO에게 증권법과 FINRA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 유지, 검토, 시험 및 수정하기 위한 절차를 적절히 시행하고 있음을 매년 증명하도록 요구
- 증권회사의 감독 절차와 통제에 관한 프로세스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또는 동등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에서 입증되어야 함

Caremark(96) 판결

- ❖ Caremark(1996) 판결은 감독자 책임 면책 사유로 내부통제 충실 마련을 제시한 실질 판례
 - (개요) 헬스케어사 Caremark 직원은 의사들에게 커미션을 지급해 연방법 위반으로 벌금,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이때 이사에 대해 감시의무(감독자 책임) 판단기준으로 내부통제 충실 마련을 명시
 - (시사점) Allen 판사는 이사로 하여금 내부통제시스템 마련 등 면책에 필요한 감독자 책임을 명시한 점에서 이사의 감독자 책임 및 면책 사유로 내부통제 충실 마련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
 - 과거 Graham(1963) 판결은 이사회로 하여금 의심할 이유가 발생했을 때만 감독자 책임 부과
- ❖ 감독자 책임의 면책 조건
 - ① 선한 신념으로 적절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노력해야 하며,
 - ②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더라도 의도적으로 감시를 소홀하여 문제,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면 안됨

⇒ ✓ 면책 조건이 다소 추상적 & 실제 적용 사례 부재

Stone(2006) 판결

- ❖ Stone(2006) 판결은 이사의 감독자 책임에 관한 보다 구체적 기준을 명시
 - (개요) AmSouth 은행은 직원의 폰지업자의 허위진술을 믿고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 과태료를 부과 받았는데, 이때 내부통제 소홀 관련해서 이사의 감독자 책임 위반 여부가 제기
 - (시사점) Stone 판사는 Caremark 판결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자, 이사의 감독자 책임 및 면책 조항으로서 '내부통제 구축 및 운영 의무'에 대한 보다 구체적 기준을 명시
- ❖ 감독자 책임의 면책 조건
 - 이사의 감시의무 관련 책임추궁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
 - ① 이사가 보고 및 정보 시스템 구축을 수행하지 않았거나, ② 이사가 보고 및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였더라도 의도적으로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에 대한 감시 또는 감독을 게을리하여 이사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위험이나 문제에 대해 정보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
 - 즉, 이사가 내부통제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구축하려는 노력을 수행하였고, 임직원들의 위법행위를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사의 감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합리성 여부는 통상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는지 등으로 판단

⇒ ✓ 면책 조건이 다소 구체화

Merchand(2019) 판결

- ❖ **Merchand(2019) 판결은 감독자 책임 면책 조건으로 조직, 절차, 위험 개연성 등을 명시**
 - (개요) 미국 아이스크림 제조회사인 블루벨 직원의 사망 및 세균 검출 사항 관련해서 회사 이사의 감시의무 소홀 여부가 제기
 - (시사점) 이사의 감시의무 이행 조건으로 하부위원회 구성 여부, 보고시스템 마련 의무, 경영상 위험에 대한 이사회 보고 의무, 정기이사회 논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사의 감시의무 소홀 여부 판단
- ❖ **감독자 책임의 면책 조건 - 합리적 내부통제 및 보고 시스템 소홀 사유**
 - ① 위험 감시를 관할하는 하부위원회를 두지 않았고,
 - ② 경영위험 관련하여 보고받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으며,
 - ③ 특정 부서의 주요 위험 개연성을 알고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 ④ 주요 위험 사항에 대해 이사회에 다루지 않은 점 등을 명시

 **✓ 면책 조건으로 적극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운영 의무**

Citigroup(2009) 판결

❖ Citigroup(2009) 판결 - 내부통제 충실 및 경영판단 원칙 존중 사례

- (개요) 금융위기 당시 Citigroup은 부채담보부증권(CDO) 영업 부문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으며 주주는 CEO 및 이사가 CDO 파산을 우려하는 Red Flag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
- (판결) 당시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가 이사의 감시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Chandler 판사는 Citigroup이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 및 위험관리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내부통제를 통한 검토 절차와 위험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등을 인정

❖ CEO 등의 감독자 책임 범위

- 금융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비즈니스 관리 부분에 있어 내부통제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에 대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
 - 즉, 법원은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에 대해 사후적 결과를 보고 의사결정의 잘잘못을 추론하기보다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
- Chandler는 원고의 'Red flags' 주장을 검토했으며, 이를 두고 위험관리 실패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책임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평가

⇒ ✓ 내부통제 충실 마련시 사업부분 손실에 대해 감독자 책임 면책

Morgan Stanley(2012) 판결

❖ Morgan Stanley(2012) 판결 – 실효적 컴플라이언스 구축시 제재 경감

- (개요) Morgan Stanley의 전직 고위 임원이 영향력 있는 중국 관리에게 부동산 지분과 자금을 비밀리에 제공하고 회사에 허위 보고한 사유로 기소했으며 담당 CEO에게도 감독자 책임 소홀 이유로 제재를 요구
- (시사점) Morgan Stanley가 평소 강력한 내부통제 체계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반영하여 Morgan Stanley 및 담당 CEO에게는 어떠한 형사 및 민사 책임을 묻지 아니함

❖ 내부통제 충실 마련의 조건

- ① Morgan Stanley가 부패방지를 위해 적절한 내부통제 정책을 구축
- ② 내부통제 정책을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상당한 시간, 비용 등을 투자)
- ③ Morgan Stanley는 정기적으로 임직원들에게 부패방지 및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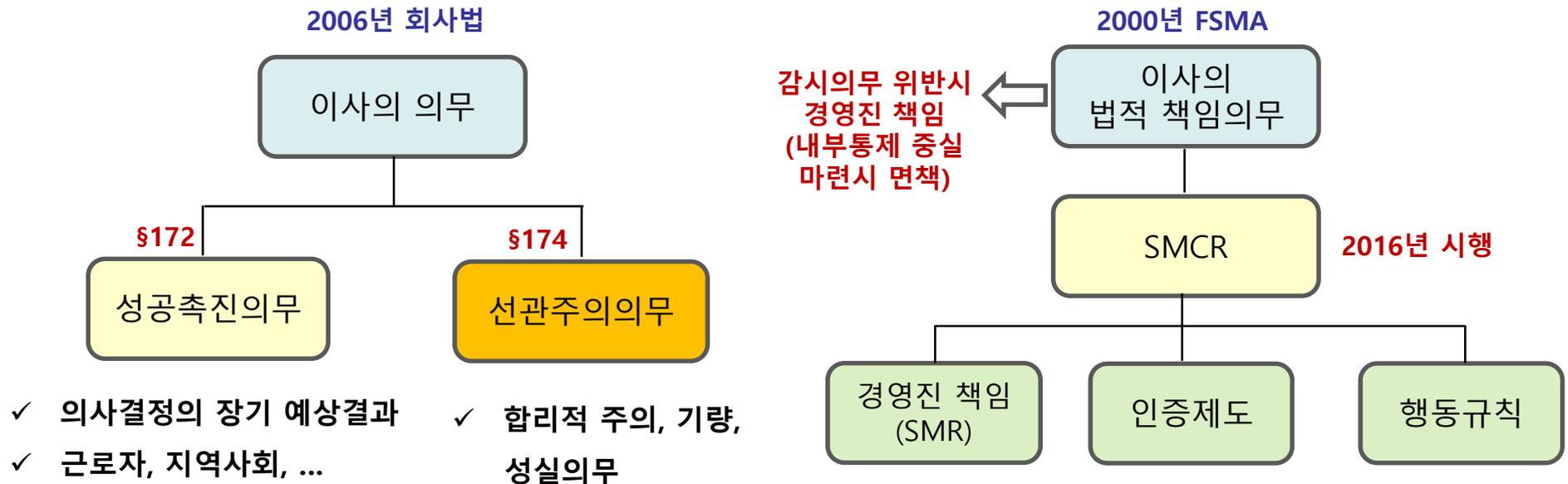
⇒ ✓ 내부통제 정책 마련 & 지속적 업데이트 & 정기적 교육

영국 내부통제 제도 및 운영 사례

영국 내부통제 제도 발전과정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FSMA의 경영진 책임명문화 및 인증제도(SMCR) 중심으로 발전**
 - 2005년 개정 회사법에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등을 규율하고 있으나, 관련 회사법 규정들만으로 이사의 감독책임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형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와 위험관리가 매우 취약하고, 특히 과도한 보수가 고위험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내부통제 개선을 모색
 - 이에, 2016년 금융서비스시장법(FSMA(2000)) 및 하위 규정(SMCR: Senior Managers and Certificate Regime) 제개정을 통해 경영진 책임을 명문화하고 책임선언서 작성 의무 등을 부여
 - 임직원의 역할 등에 따라 합리적 수준의 통제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제재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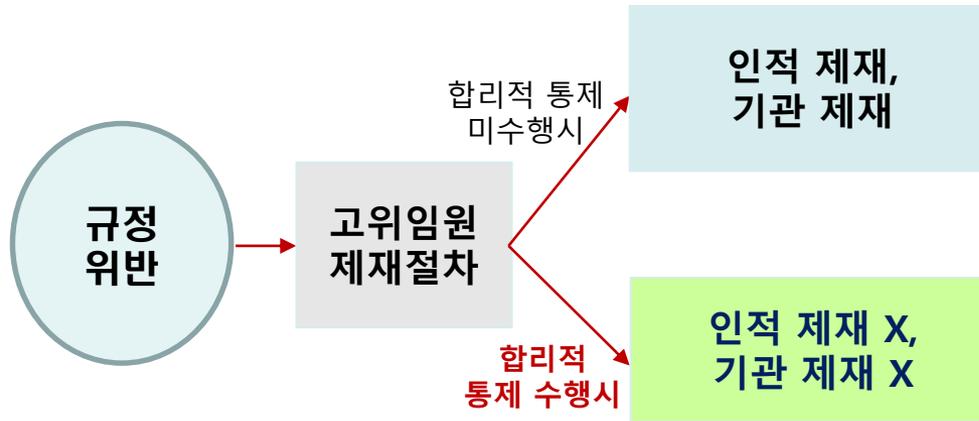
영국 내부통제 제도 개요



금융회사 고위 경영진의 법적 책임질 의무

- ❖ 금융회사 주요 임원에 대해 내부통제를 포함한 법적 책임질 의무를 부여(FSMA §66A(5))
 - 2016년 5월 FCA, PRA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FSMA 개정안을 시행
 - FCA와 PRA는 고위 임원에 대해 다음 사항 위반시 제재조치를 수행할 수 있음
 - ① 금융회사의 규정 위반이 있고,
 - ② 해당 위반 행위가 발생한 기업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위 임원이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며,
 - ③ 관련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그 지위상 예방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reasonable steps)(예: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이때 고위임원 제재를 위한 증명책임은 감독당국에게 있으며, 인적 제재와 함께 기관 제재 가능

FSMA상 고위 경영진의 법적 책임질 의무



SMCR(Senior Managers Certificate Regime) 제도 개요

❖ 경영진 책임문서 등을 감독당국에게 제출해야 함

- 금융회사 임직원의 업무 유형별로 고위 임원진의 책임 범위를 사전에 정한 책임지도, 지배구조지도 등을 감독당국에게 제출하고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 고위 경영진 기능(SMF)별로 담당업무 및 책임 범위를 명시한 책임문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함
 - 예) 고위 경영진 기능별 업무로는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업무집행이사, 최고 리스크관리담당자, 내부감사본부장, 소비자보호책임자, 법령준수감독자, 그룹 부문장 등

❖ 모든 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행동규칙과 최고 경영진이 준수해야 하는 행동규칙으로 세분화

- 모든 임직원 준수사항: 성실성, 근면성, 감독당국에의 협조, 고객이익 중시, 시장 행위기준 준수 등
- 최고 경영진 준수사항: 내부통제관련 사항, 직원에게 권한을 위임한 경우 업무운영에 관한 합리적 대응책 구축 사항 등

❖ SMCR 위반시 개인 제재, 기관 제재 등을 받으며 증명책임은 감독당국에게 있음

- 개인에 대해서는 견책(public censure), 특정 SMF의 수행 중지·박탈 그리고 민사제재금 등 부과
- SMCR 위반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증명책임을 지므로 위반의 사전방지를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에 관하여 임원들은 감독기관인 FCA와 PRA에 대하여 설명책임을 부담



- ✓ 고위 임직원은 면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내부통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노력을 수행
- ✓ 고위 임직원 책임 범위가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합리적 수준의 통제시스템 구축 용이

'내부통제 관련 상당한 조치'의 판단 여부

1. 회사 규모, 업무 복잡성
2. 경영진이 실제 안 것, 지위상 당연히 알아야 할 것
3. 경영진의 전문성 및 능력
4.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대안을 택할 수 있었는지
5. 경영진의 실제 역할과 책임
6. 경영진이 권한을 위임했는지, 위임된 권한을 모니터링했는지
7. 회사의 상황과 영업환경, 목표와 상충되는 경우 적절한 위험평가가 있었는지

자료: 이효섭, 이석훈, 안수현(2022) 참조

영국 FCA의 감독자 책임 부과시 고려사항(1)

DEPP(Decision Procedure & Penalties Manual) 6.2.9.E

- 1) SMF(Senior Manager Function)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 2) 이용 가능 정보를 고려할 때 , SMF 관리자가 합당한 주의를 하였는지 여부
- 3) SMF가 조취할 수 있는 합리적 결정에 도달했는지 여부
- 4) 기업 사업의 성격, 규모, 복잡도
- 5) 그 밖의 자신의 역할 및 책임과 관련하여 알아야 하는 지식
- 6) 합리적 조치와 책임이 적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사실
- 7) 행정법 및 하위규정, 회사 내규, 관습법에 따라 행동했는지 여부
- 8) 책임 위임시 능력, 지식, 연공서열, 기술을 갖춘 적절한 사람에게 위임여부
- 9) 국내외 부서 보고 라인이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 10) SMF 관리자가 맡은 활동에 대해 회사가 능력, 지식, 기술, 기능을 심사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과 절차를 가졌는지 여부
- 11) SMF 관리자가 책임지고 있는 활동을 위해 거버넌스, 운영, 위험관리 조치들을 평가하고 합리적으로 점검, 운영, 위험관리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
- 12) SMF 관리자 업무 대행시 질서 있는 전환을 위해 합리적 조취 여부
- 13) SMF 관리자 교체시 질서 있는 전환을 위해 합리적 조취 여부

영국 FCA의 감독자 책임 부과시 고려사항(2)

- 4) SMF 관리자가 다음 회사 활동에 대해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여부
- (a) 전문가가 아닌 경우, 해당 분야 내의 전문가 또는 기업 내외부로부터 해당 분야 내의 문제에 대해 충분한 보고를 보장하거나 충분한 설명을 구하지 않는 경우
 - (b) 개인 또는 부서에게 위임된 사안 또는 책임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이해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 (c)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회사 내부 또는 외부로부터 독립적 전문가의 의견을 얻지 못한 경우
 - (d)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의 확장이나 기업 구조조정을 허용하는 경우
 - (e)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 및 기업 활동, 비정상적인 거래, 회사 경영 수익성에 크게 기여하거나 이와 같은 회사의 사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이나 부서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경우
- 15) SMF 관리자가 회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 결정에 관여하고 집단적으로 결정내리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해당 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 문제를 스스로 알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하고 합리적 주의, 신의성실 의무를 수행했는지 여부
- 16) SMF 관리자가 회사 지시를 따르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 17) SMF 관리자가 얼마나 오랜기간 해당 업무의 역할과 책임을 맡았으며, 질서있는 인수인계가 있었는지 여부
- 18) 기업 내부통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SMF 관리자가 적절한 컴플라이언스 조직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했는지 여부

Commerzbank(2020)

❖ FCA는 Commerzbank의 내부통제 개선 요구 수용을 계기로 제재금 감면

- (개요) FCA는 런던에 지점을 둔 Commerzbank AG가 자금세탁 방지 규정 등의 위반 건에 대해 내부통제 취약점이 지속되었다고 지적하여 Commerzbank 회사에게 대규모 벌금을 부과
 - 2012년~2017년 9월까지 Commerzbank 런던지점의 AML 위험관리 시스템이 실패함에 따라 Principles for Business(Principle 6)의 Principle 3를 위반했다고 명시
- (시사점)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취약점을 인정하고 내부통제 개선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벌금을 경감한 점에서 내부통제 충실 마련이 제재 경감으로 활용된 사례로 볼 수 있음

❖ FCA가 제재를 경감한 사유 - FCA의 요구를 수용 &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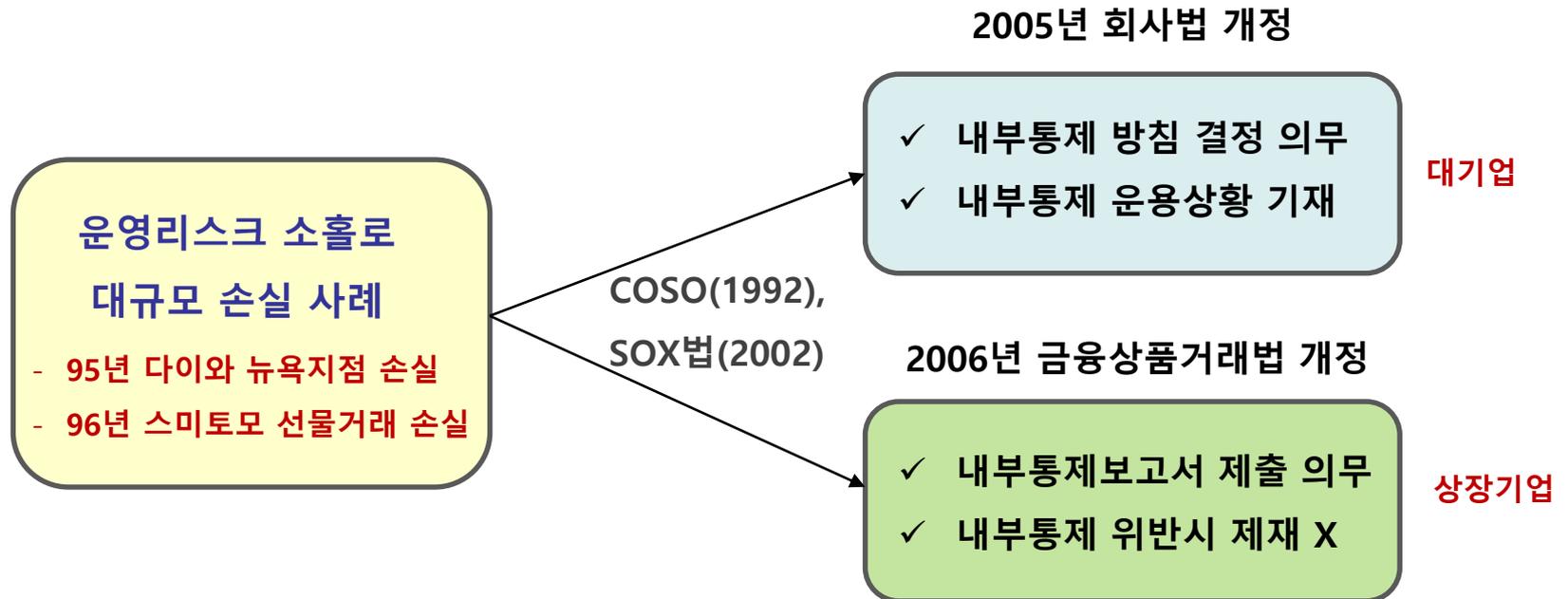
- FCA는 Commerzbank에게 AML 위험 통제 프레임워크의 개선을 요구
- 구체적으로, FCA는 2000 영국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U.K.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의 Section 166에 따라 전문가를 임명하여 회사의 금융범죄와 관련된 통제의 적절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도록 요구
- 해당 전문가는 당사의 금융범죄 통제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며 2018년 이후 매년 Commerzbank가 수행한 개선작업의 효율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내부통제 개선 보고서)를 발행
- Commerzbank는 FCA의 우려에 대응하여 2017년 3월 '대규모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자사의 근본적 약점을 해결하고 비즈니스 상에서의 특정 개선사항을 구현
- 또한 새로운 고위험 고객을 포함하여 모든 새로운 거래 금융활동을 중단하는 광범위한 사업 제한 조치를 자발적으로 시행

일본 내부통제 제도 및 운영 사례

일본 내부통제 제도 발전과정

- ❖ 회계부정 방지를 목적으로 COSO('92), SOX법('02)를 참고하여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
 - 90년대 다이와은행, 스미토모 상사의 대규모 손실로 내부회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
 - 2005년 회사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이사회로 하여금 내부통제 구축 및 운영 의무가 부여
 - 2006년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상장기업에 대해 매분기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보고서를 감독당국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감사증명을 규정

일본 내부통제 제도 개요



2005년 회사법의 내부통제 방침 마련 의무(대기업)

- ❖ **대기업 이사회에게 내부통제 방침 마련 의무 & 사업보고서 기재 의무를 부여**
 - 일정 요건을 갖춘 대기업(자본금 5억엔)은 내부통제 기본방침을 정할 의무를 부여(회사법 §362.4.6)
 - 내부통제 범위: 이사의 직무 집행에 관한 정보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체제, 위험관리에 관한 규정, 이사의 직무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확보하기 위한 체제, 사용인 업무가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하도록 확보하기 위한 체제 등 시행령으로 정한 사항 등 시행령 규정 사항
 - 해당 기업은 내부통제 운영상황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의무(동법 시행규칙 §118.2)
- ❖ **내부통제 방침 마련 미준수시 구체적 제재 근거는 찾기 어려움**
 - 내부통제 기본방침을 정할 의무를 소홀히 한다고 해서 임직원 또는 회사에 대해 금전 제재를 수행한다는 구체적 제재 규정은 찾기 어려움
 - 단, 감독당국이 사후적으로 내부통제 소홀 마련 등의 이유로 대기업이 큰 손실을 본 것이라고 판단하면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 **이사의 감독책임 관련 선관주의의무 준수 여부는 고의성 여부를 보고 판단**
 - 이사회 이사가 고의로 법령, 정관에 위반하여 업무 지시 등을 수행할 경우 이사에 대해 책임을 부가할 수 있으며 민사와 형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음(회사법 §976.7)
 - 더불어 해당 사항 발생시 법인에 대해서도 최대 5억엔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회사법 §207조의2)

2006년 금융상품거래법의 내부통제 관련 의무(상장기업)

❖ 내부통제보고서를 감독당국에게 제출하고 외부 감사증명을 의무

- 상장기업은 매년 재무보고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평가한 내부통제보고서를 감독당국에게 제출 의무를 부여(동법 §24의4.4.1, §193조의2.2)
 - 내부통제의 범위: 재무계산에 관한 서류, 그 밖의 정보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시행령으로 정한 체제 등으로 정하고 있어, 재무보고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내부통제 구축 의무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 내부통제보고서는 이해관계가 없는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의 감사증명을 받도록 요구

❖ 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시 제재 근거는 없으나 내부통제보고서에 중요사항 미기재시 제재

- 내부통제보고서의 미제출, 허위 기재시 담당 임직원에게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동법 §197조의2.5, §197조의2.6, §207조의2)

❖ 금융상품거래업자에 대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제시(검사 매뉴얼)

- 경영 행태 / 법령 준수 행태 / 내부관리 행태 / 감사 행태 / 리스크관리 행태 등으로 구분
- 예1) 경영 행태: 금융상품거래업자로 하여금 금융상품 시장의 담당자로서 심각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투자자 보호 및 공정한 시장 형성의 관점에서 적절한 관리를 수행하도록 명시
- 예2) 법령 준수 행태: 금융상품 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관점에서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건전하고 적절하게 업무를 운영하고 관련 법규 준수 행태를 정비할 것을 명시
- 예3) 리스크관리 행태: 금융상품거래업자 업무에 내재된 다양한 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위험관리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자기자본규제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며 기타 필요한 리스크관리 행태를 정비하도록 명시

국내 시사점

국내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향의 시사점

감독자
책임 명확화

- ✓ 임직원 규정위반 관련 감시 소홀시 CEO까지 감독자책임 부과
(美: R&R에 따라 중간감독자까지 책임 부과, 英: 책임지도)

인센티브
제시

- ✓ 내부통제 충실 이행시(구축, 운용, 관리 등) 제재 경감

합리적
면책 조건

- ✓ 책임지도, 맞춤형 내부통제 정책, 갱신, 정례 평가,
임직원 교육, 내부통제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감사합니다.